

1999年度 식품첨가물공전 개정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식품의 개발,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年度에 다섯차례에 걸쳐 식품첨가물공전의 내용을 개정 고시하였다.

본란에서는 식품영업자 및 관련업계에서 식품첨가물공전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파악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99年度에 개정고시된 식품첨가물공전의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.

1. 1차 개정

■ 식약청 고시 제'99-22호('99.4.12)

1) 천연첨가물 추출용매인 삼화에틸렌

- 및 염화메틸렌 성분규격 신설
- 2) 레시틴 정상항에 반고체상 및 덩어리 제품도 포함토록 개정
- 3) 베리류색소 이산화황 시험방법을 JECFA방법으로 개정
- 4) 벤토나이트 순도시험중 중금속(10ppm 이하)을 납(40ppm이하)으로 개정
- 5) 심황색소 정의항에 색가조정,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,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함.
- 6) 안나토색소 순도시험중 잔류용매 규격 신설

현 행	개 정
<p>제2. 제조기준 천연첨가물의 추출용제</p> <p>천연첨가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트론으로서 다음의 개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4.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. 천연첨가물</p>	<p>천연첨가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트론, 삼염화에틸렌, 염화메틸렌으로서 다음의 개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삼염화에틸렌</p> <p>삼염화에틸렌의 성분규격 생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염화메틸렌</p> <p>염화메틸렌의 성분규격 생략</p>

현 행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. 레시틴</p> <p>성 상 이 품목은 점조한 액상의 물질, 분말 또는 입상으로 가지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. 베리류색소</p> <p>베리류색소의 성분규격 순도시험</p> <p>(3) 이산화황 : 이 품목 10g을 취하여 「카라멜」의 순도시험 (7)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양은 0.02% 이하이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. 벤토나이트</p> <p>벤토나이트의 성분규격 순도시험</p> <p>(3) 중금속 : 10ppm 이하(시험방법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9. 심황색소</p> <p>정 의 이 품목은 이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3. 안나토색소</p> <p>안나토색소의 성분규격 순도시험 (신 설)</p>	<p>성 상 이 품목은 점조한 액상의 액체, 반고형상, 덩어리, 분말 또는 입상으로 가지고 있다.</p> <p>(3) 이산화황 : 「포도과피추출색소」의 순도시험 (3)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양은 1색가($E_{1cm}^{1\%}$)에 대하여 0.005% 이하이어야 한다.</p> <p>(3) 납 : 10ppm 이하(시험방법 생략)</p> <p>정 의 이 품목은 이다. 다만, 색가조정,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,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3. 안나토색소</p> <p>안나토색소의 성분규격 순도시험</p> <p>(3) 잔류용매 : 「과포리카추출색소」의 순도시험(4)에 따라 시험할 때, 염화메틸렌, 삼염화메틸렌 30ppm이하 (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) 아세톤 30ppm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ppm이하 메틸알콜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</p>

2. 2차 개정

■ 식약청 고시 제'99-32호('99.6.21)

천연첨가물인 올레오레진캡시킴, 향신료 올레오레진류, 오징어먹물색소 및 자주색 옥수수색소인 사용기준을 개정

- 식품의 위화(adulteration) 방지를 위하여 천연식품[식육류, 어패류

(경육 포함), 과실류, 채소류, 해조류,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 절단 등)), 다류, 고춧가루 및 실고추, 김치류, 고추장 및 식초에 사용 제한하고 있는 다른 천연착색료의 사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누락한 대상식품 추가

현 행	개 정
<p>나. 천연첨가물</p> <p>45. 올레오레진캡시킴, 102. 향신료올레오레진류, 113. 오징어먹물색소, 116. 자주색옥수수색소</p> <p>올레오레진캡시킴(향신료올레오레진류, 오징어먹물색소, 자주색옥수수색소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올레오레진캡시킴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[식육류, 어패류, 과일, 채소류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 절단 등)], 고춧가루 및 실고추, 김치류 및 고추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올레오레진캡시킴(향신료올레오레진류, 오징어먹물색소, 자주색옥수수색소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1.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천연식품(식육류, 어패류(경육포함), 과일류, 채소류, 해조류,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 절단 등))</p> <p>2. 고춧가루 및 실고추</p> <p>3. 김치류</p> <p>4. 고추장</p> <p>5. 식초</p>

3. 3차 개정

■ 식약청 고시 제'99-41호('99.7.26)

- 1) 화학적합성품(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) 2품목 신규 지정
 - 성분규격, 사용기준 신설
- 2) 제조기준 및 혼합제한 개정
 - 제품검사 대상품목인 보존료 및 타르색소는 다른 용도의 첨가물과 혼합하여 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함.
- 3)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항 개정
 -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을 제조, 가공, 수입함에 있어 사용되는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규격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- 4) 게라니올, 제피알콜, 데카날, 데카놀, 메틸β-나프틸케톤, dl-멘톨, l-멘톨, 벤질알콜, 시트로넬롤, 옥

- 틸알데히드, 초산부틸 및 초산신나밀 등 성분규격 개정
- 착향료 일반시험법 개정에 따라 정량법등 개정
 - 5) 식초의 아황산염류 사용기준(이산화황으로서 0.03g/kg 이하)을 0.17g/kg 이하로 개정
 - 6) 신규지정한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을 안식향산등 다른 보존료와 병용 사용토록 함.
 - 7) 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을 마아가린류에 사용토록 함.
 - 8) 프로피온산은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 - 9) 천연착향료 정의항에 향기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문구 삽입
 - 10) 일반시험법중 알콜류함량측정법 및 케톤류 측정법 등 착향료시험법 개정

현 행	개 정
<p>제2. 제조기준</p> <p>[혼합제제]</p> <p>2. 제품검사 대상첨가물은 다른 용도의 첨가물과는 혼합제제로 만들 수 없다(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).</p> <p>3.~5. 생 략</p>	<p>제2. 제조기준</p> <p>[혼합제제]</p> <p><삭 제></p> <p>2.~4. 생 략</p>

현행	개정
<p>제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</p> <p>⑤대의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화획득용식품 및 관세법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안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6조 및 이 규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생산국의 관련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	<p>제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</p> <p>⑤대의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관세법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소비되는 식품 및 선취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함에 있어 사용되는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6조 및 이 규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제4. 품목별 규격 및 기준</p> <p>가. 화학적합성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게라니올</p> <p>게라니올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 및 총알콜류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아세틸화유 약 1.2g을 정밀히 달아 (1)식에 의해 알콜류함량을 구하여 그 값을 이 품목의 함량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. 계피알콜</p> <p>계피알콜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 및 총알콜류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, 그 측정값을 함량으로 한다. 다만, 아세틸화유 약 0.5g을 정밀히 달아 시험하고 (1)식에 의해 알콜류함량을 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8. 데카날</p> <p>데카날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방치시간은 15분으로 한다. 0.5N 염산 1ml = 78.14mg C₁₀H₂O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. 데카놀</p> <p>데카놀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 및 총알콜류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아세틸화유 약 1g을 정밀히 달아 (1)식에 따라 알콜류함량을 구하여 그 값을 이 품목의 함량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게라니올</p> <p>게라니올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측정법 제1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아세틸화유 약 1g을 이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. 계피알콜</p> <p>계피알콜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약 0.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함량측정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한다. 0.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1ml = 67.09mg C₉H₁₀O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데카날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방치시간은 15분으로 한다. 0.5N 염산 1ml = 78.13mg C₁₀H₂O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데카놀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측정법 제1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아세틸화유 약 1g을 이용한다.</p>

현행	개정
<p>56. 메타중황산칼륨, 66. 무수아황산 96. 산성아황산나트륨, 152. 아황산나트륨, 233. 차아황산나트륨, 333. 메타중아황산 나트륨</p> <p>메타중아황산칼륨(무수아황산, 산성아황산 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, 메 타중아황산나트륨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 의 사용기준</p> <p>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 : 생 락</p> <p><신 설></p> <p>10. 생 락</p> <p>59. 메틸 β -나프틸케톤</p> <p>메틸 β -나프틸케톤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 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<u>히드록실아민법</u>에 따라 시험한 다. 다만, 가열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.</p> <p>62. dl-멘 톨</p> <p>dl-멘톨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중 알콜류함 량 및 총알콜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 만, 아세틸화유 약 1g을 정밀히 달아 (1)식에 의해 알콜류함량을 구하여 그 값 을 이 품목의 함량으로 한다.</p> <p>63. l-멘 톨</p> <p>l-멘톨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중 알콜류함 량 및 총알콜류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 다. 다만, 아세틸화유 약 1g을 정밀히 달 아 (1)식에 의해 알콜류 함량을 구하여 그 값을 이 품목의 함량으로 한다.</p> <p>72. 벤질알콜</p> <p>벤질알콜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착향료시험법중 알콜류함량 및 총알 콜류함량측정법에 따라 정량한다. 단, 검 체의 양은 약 0.5g을 취한다.</p>	<p>메타중아황산칼륨(무수아황산, 산성아황산 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, 메 타중아황산나트륨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 의 사용기준</p> <p>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 : 생 락</p> <p>10. 양조식초 : 0.17g/kg</p> <p>11. 생 락</p> <p>메틸 β -나프틸케톤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 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<u>히드록실아민법 제2법</u>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가열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.</p> <p>dl-멘톨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 료시험법중 알콜류함량측정법 제2법에 따 라 시험한다.</p> <p>l-멘톨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 료시험법중 알콜류함량측정법 제2법에 따 라 시험한다.</p> <p>벤질알콜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 0.5g을 정밀히 달아 착향 료시험법중 알콜류함량측정법 제2법에 따 라 시험한다.</p>

현행	개정
<p>104. 소르빈산, 105. 소르빈산칼륨</p> <p>소르빈산(소르빈산칼륨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1.~3. : 생 락</p> <p>4. <u>잼류 : 1g/kg 이하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</p> <p>5.~7. : 생 락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소르빈산(소르빈산칼륨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1.~3. : 생 락</p> <p>4. <u>잼류 : 1g/kg 이하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</p> <p>5.~7. : 생 락</p> <p>8. <u>마아가린류 : 1g/kg 이하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</p>
<p>120. 시트로넬롤</p> <p>시트로넬롤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 및 총알콜류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 아세틸화유 약 1g을 정밀히 달아 시험하고 (1) 검체중에 에스테르가 없는 경우에 따라 함량을 구한다.</p>	<p>시트로넬롤의 성분규격</p> <p>정량법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알콜류 함량측정법 제1법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 아세틸화유 약 1g을 이용한다.</p>
<p>153. 안식향산</p> <p>안식향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</p> <p>1.~2. : 생 락</p> <p>3. <u>마아가린류, 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: 1g/kg 이하</u></p> <p>4.~5. : 생 락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안식향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</p> <p>1.~2. : 생 락</p> <p>3. <u>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: 1g/kg 이하</u></p> <p>4.~5. : 생 락</p> <p>6. <u>마아가린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</p>
<p>154. 안식향산나트륨</p> <p>안식향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</p> <p>1.~2. : 생 락</p> <p>3. <u>마아가린류, 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: 1g/kg 이하</u></p> <p>4.~5. : 생 락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안식향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</p> <p>1.~2. : 생 락</p> <p>3. <u>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</u></p> <p>4.~5. : 생 락</p> <p>6. <u>마아가린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</p>

현행	개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75. 옥틸알데히드</p> <p>옥틸알데히드의 성분규격 정량법 이 품목 약 1.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<u>히드록실아민법 제2법</u>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. 0.5N 염산 1ml = 64.11mg C₈H₁₆O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0. 초산부틸</p> <p>초산부틸의 성분규격 순도시험 (4) 산가 :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, <u>0.1이하</u> 이어야 한다. 정량법 : 이 품목 1.5g을 정밀히 달아 1N 수산화칼륨용액 25ml, 무수이소프로필알콜 25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고 30분간 방치한다. 이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ml를 넣어 섞은 후 0.5N 황산으로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다. 따로 공시험을 한다. 0.5N 황산 1ml = 58.08mg C₆H₁₂O₂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3. 초산신나밀</p> <p>초산신나밀의 성분규격 정량법 : 이 품목 약 1.2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0.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1ml = 86.11mg C₁₁H₁₂O₂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4.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</p> <p>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쟀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,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3. 과·체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0.25g/kg 이하(<u>안식향산나트륨</u>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 4.~8. : 생략 	<p>옥틸알데히드의 성분규격 정량법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<u>히드록실아민법 제1법</u>에 따라 시험한다. 다만,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. 0.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1ml = 64.11mg C₈H₁₆O</p> <p>초산부틸의 성분규격 순도시험 (4) 산가 :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, <u>1.0이하</u> 이어야 한다. 정량법 : 이 품목 약 0.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0.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1ml = 58.08mg C₆H₁₂O₂</p> <p>초산신나밀의 성분규격 정량법 :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. 0.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1ml = 88.11mg C₁₁H₁₂O₂</p> <p>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쟀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<u>안식향산칼륨</u>, <u>안식향산칼슘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,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3. 과·체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0.25g/kg 이하(<u>안식향산나트륨</u> 및 <u>안식향산칼륨</u>, <u>안식향산칼슘</u>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 4.~8. : 생략

현행	개정
<p>277.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썬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3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0.25g/kg 이하(<u>안식향산나트륨</u>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 4. ~8. : 생략 	<p>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썬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<u>안식향산칼륨</u>, <u>안식향산칼슘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3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0.25g/kg 이하(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<u>안식향산칼륨</u>, <u>안식향산칼슘</u>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 4. ~8. : 생략
<p>302. 프로피온산타르류, 306.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나트륨(프로피온산칼슘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2. : 생략 3. 썬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	<p>프로피온산나트륨(프로피온산칼슘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2. : 생략 3. 썬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<u>안식향산칼륨</u>, <u>안식향산칼슘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
<p>376.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2. : 생략 3. 썬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	<p>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2. : 생략 3. 썬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<u>안식향산나트륨</u>, <u>안식향산칼륨</u>, <u>안식향산칼슘</u>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<p>다만,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.</p>
<p>386. 규산마그네슘 규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함 량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(MgO)으로서 15.5%, 이산화규소(SiO₂)로서 67.0% 이상을 함유한다. 나. 천연첨가물</p>	<p>규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함 량 이 품목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…… 이상을 함유한다.</p>

현행	개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7. 천연착향료</p> <p>정의 이 품목은 아래의 기원에서 추출,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<u>이들은 정유, 천연추출물(증류물 포함) 등을 말한다.</u></p> <p>다. 혼합제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보존료제제</p> <p>정의 보존료제제라 함은 <u>보존료의 1성분 또는 2성분 이상을 포도당, 전분, 설탕, 식용유지 또는 물과 혼합 또는 희석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.</u> 다만, 2종 이상의 보존료를 혼합하여 제제를 만들 경우 개별보존료 <u>규격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또는 희석되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 타르색소제제</p> <p>정의 타르색소제제라 함은 타르색소를 2종 이상 혼합하거나, <u>그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제5. 일반시험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4. 착향료시험법</p> <p>바. 알콜류함량 및 총알콜류함량측정법</p> <p>알콜류함량이라 함은 검체중에 유리의 상태로 함유되는 알콜류의 함량을 말하며, <u>총알콜류함량이라 함은 검체중에 유리의 상태 및 에스테르의 상태로 존재하는 알콜류의 함량을 말한다.</u> 알콜류함량 및 총알콜류함량을 측정하려면 <u>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에 따른다.</u> 검체 10ml, 무수초산 10ml …… 중략 …… 측정한다. 이 에스테르가를 아세틸가라고도 부른다. <u>따른 검체의 에스테르가를 측정한다.</u> 아세틸가 = 계산식 생략 (1) <u>검체중에 에스테르가 없는 경우</u> 알콜류함량(%) = 계산식 생략 (2) <u>검체중에 에스테르가 있는 경우</u> <생략></p>	<p>정의 이 품목은 아래의 기원에서 추출,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<u>향기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, 천연추출물(증류물 포함) 등을 말한다.</u></p> <p>정의 보존료제제라 함은 <u>보존료를 2종 이상 혼합하거나, 그 1종 이상을 기타 식품첨가물 또는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희석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…… 개별보존료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또는 희석되어야 한다.</u></p> <p>정의 타르색소제제라 함은 타르색소를 2종 이상 혼합하거나, <u>그 1종 이상을 기타 식품첨가물 또는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희석한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바. 알콜류함량측정법</p> <p>알콜류함량이라 함은 검체중에 유리의 상태로 함유되는 알콜류의 함량을 말한다.</p> <p>조직법 <u>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에 따른다.</u> 검체 10ml, 무수초산 10ml …… 중략 …… 측정한다.</p> <p>이 에스테르가를 아세틸가라고도 부르며 <u>다음식에 따라 그 양을 측정한다.</u> 아세틸가 = 계산식 생략 알콜류함량(%) = 계산식 생략 a : <u>공시험의 0.5N 염산의 소비량(ml)</u> b : <u>분시험의 0.5N 염산의 소비량(ml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p>

현 행	개 정
<p>〈신 설〉</p> <p>사.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 (3) 히드록실아민법</p> <p>제1법 규정량의 검체를 …… 규정시간 방치하거나 수욕상에서 규정시간 …… 중략 ……</p> <p>제2법 규정량의 검체를 …… 규정시간 방치하거나 수욕상에서 규정시간 …… 중략 ……</p>	<p>제2법 〈시험방법 생략〉</p> <p>제1법 규정량의 검체를 …… 규정시간 방치하거나 환류냉각기를 연결하여 수욕상에서 규정시간 …… 중략 ……</p> <p>제2법 규정량의 검체를 …… 규정시간 방치하거나 환류냉각기를 연결하여 수욕상에서 규정시간 …… 중략 ……</p>

4. 4차 개정

■ 식약청 고시 제'99-53호('99.11.9)

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기준 개정
- 사용 제한하고 있는 알사탕을 캔디류로 함.

5. 5차 개정

■ 식약청 고시 제'99-57호('99.11.25)

- 1) 화학적 합성품(글루콘산칼륨, L-카르니틴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) 3 품목 및 천연첨가물(가재색소, 글루코사민, 김색소, 봉신허추출물, 크릴색소) 5품목 신규지정

- 성분규격, 사용기준 신설
- 2)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개정
 - L-카르니틴을 이유식류 및 조제유류에 사용토록 함.
- 3) 비타민B₂인산에스테르나트륨 순도 시험중 비선광도는 무수물로 하도록 함.
- 4) 신규 지정한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을 소르빈산등 다른 보존료와 병용 사용토록 함.
- 5) 산성백토 성분규격 신설
- 6) D-키실로스 정량법중 시료 채취량 개정
- 7) 인돌 및 그 유도체이외의 다른 질소화합물인 아민, 옥사졸, 피라진, 피롤, 피리딘, 퀴놀린, 티아졸 및 그 유도체도 착향료로 인정함.

현 행	개 정
<p>제3.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</p> <p>①이유식류에는 강화제(구연산삼나트륨…… 글로톤산철, 글로톤산칼슘, …… β-카로틴, 타우린, …… L-히스티딘), 카제인 …… 헴철이외의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</p> <p>제4.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. 화학적합성품</p>	<p>①이유식류에는 강화제(구연산삼나트륨…… 글로톤산철, 글로톤산칼륨, 글로톤산칼슘, …… β-카로틴, L-카르니틴, 타우린, ……L-히스티딘), 카제인 …… 헴철이외의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</p>

현행	개정
<p>85. 비타민B₂인산에스테르나트륨</p> <p>순도시험 (2) 비선광도 : 이 품목 측정할 때, $[a]_D^{20} = \dots\dots$ 한다.</p>	<p>순도시험 (2) 비선광도 : 이 품목 측정할 때, $[a]_D^{20} = \dots\dots$ 한다.</p>
<p>104. 소르빈산, 105. 소르빈산칼륨</p> <p>소르빈산(소르빈산칼륨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사용량은 소르빈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치즈 : <u>3g/kg 이하</u>(프로피온산, 합계가 <u>3g/kg 이하</u>) 2. 식육가공품 <u>모조치즈, 저지방마아가린(지방스프레드) : 2g/kg 이하</u> 3. 염분 8%이하의 젓갈류, 파인애플 농축과즙 : <u>1g/kg 이하</u> 4. 잼류 : <u>1g/kg 이하</u>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<u>안식향산칼슘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</u>) 5. ~7. : 생략 8. 마아가린류 : <u>1g/kg 이하</u>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<u>1g/kg 이하</u>) 	<p>소르빈산(소르빈산칼륨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사용량은 소르빈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치즈 : <u>3.0g/kg 이하</u>(프로피온산, 합계가 <u>3.0g/kg 이하</u>) 2. 식육가공품 <u>모조치즈, 2.0g/kg 이하</u> 3. 염분 8%이하의 젓갈류, 파인애플 농축과즙 : <u>1.0g/kg 이하</u> 4. 잼류 : <u>1.0g/kg 이하</u>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<u>안식향산칼슘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</u>) 5. ~7. : 생략 8. 마아가린 : <u>1.0g/kg 이하</u>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<u>1.0g/kg 이하</u>) 9. 저지방마아가린(지방스프레드) : <u>2.0g/kg 이하</u>(안식향산, 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<u>2.0g/kg 이하</u>이어야 하며, 그 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<u>1.0g/kg 이하</u>)
<p>153. 안식향산</p> <p>안식향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2. : 생략 3. 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: <u>1g/kg 이하</u> 4. 잼류 : <u>1g/kg 이하</u>(소르빈산, <u>소르빈산칼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</u>) 5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<u>0.25g/kg 이하</u>(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<u>0.25g/kg 이하</u>) 	<p>안식향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2. : 생략 3. 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: <u>1.0g/kg 이하</u> 4. 잼류 : <u>1.0g/kg 이하</u>(소르빈산, <u>소르빈산칼륨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</u>) 5. 생략

현행	개정
<p>6. 마아가린류 : <u>1g/kg 이하(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</p> <p>154. 안식향산나트륨, 388. 안식향산칼륨, 389. 안식향산칼슘</p> <p>200. 인돌 및 그 유도체</p> <p>인돌 및 그 유도체의 사용기준 인돌 및 그 유도체는 착향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274.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잼류 : <u>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 3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<u>0.25g/kg 이하(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</u> 4. ~8. 생략 <p>277.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잼류 : <u>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u> 	<p>6. 마아가린류 : <u>1.0g/kg 이하(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. 다만 저지방마아가린(지방스프레드)의 경우 사용량의 합계가 2.0g/kg 이하이어야 하며 그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.0g/kg 이하)</u></p> <p>안식향산나트륨(칼륨 및 칼슘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</p> <p>200. 인돌, 아민, 옥사졸, 치아졸, 퀴놀린, 피라진, 피롤, 피리딘 및 그 유도체 인돌, 아민, 옥사졸, 치아졸, 퀴놀린, 피라진, 피롤, 피리딘 및 그 유도체의 사용기준 인돌, 아민, 옥사졸, 치아졸, 퀴놀린, 피라진, 피롤, 피리딘 및 그 유도체는 착향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잼류 : <u>1.0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)</u> 3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<u>0.25g/kg 이하(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</u> 4. ~8. 생략 <p>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사용량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잼류 : <u>1.0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……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)</u>

현행	개정
<p>3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0.25g/kg 이하(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</p> <p>4.~8. 생략</p> <p>302. 프로피온산나트륨, 306.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(나트륨 및 칼슘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p>1. 생략 2. 치즈 : 3g/kg 이하(소르빈산 및 합계가 3g/kg 이하) 3. 잼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6. 프로피온산</p> <p>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p>1. 생략 2. 치즈 : 3g/kg 이하(소르빈산 및 합계가 3g/kg 이하) 3. 잼류 : 1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량의 합계가 1g/kg 이하) 다만,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.</p> <p>나. 천연첨가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1. 산성백토</p> <p>정의 <신설> 산성백토의 성분규격 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9. D-키실로오스</p> <p>강열잔류물 이 품목 약 0.5g을 정밀히 달아 그 양은 0.05% 이하이어야 한다.</p>	<p>3. 과·채가공품류(망고에 한한다) : 0.25g/kg 이하(안식향산나트륨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사용량의 합계가 0.25g/kg 이하)</p> <p>4.~8. 생략</p> <p>프로피온산(나트륨 및 칼슘)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p>1. 생략 2. 치즈 : 3.0g/kg 이하(소르빈산 및 합계가 3.0g/kg 이하) 3. 잼류 : 1.0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)</p> <p>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</p> <p>1. 생략 2. 치즈 : 3.0g/kg 이하(소르빈산 및 합계가 3.0g/kg 이하) 3. 잼류 : 1.0g/kg 이하(소르빈산, 소르빈산칼륨, 안식향산, 안식향산칼륨, 안식향산칼슘, 안식향산나트륨,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,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 이하) 다만,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.</p> <p>정의 생략 산성백토의 성분규격 성상 생략 확인시험 (1), (2) 생략 순도시험 (1) 액성, (2) 비소 및 (3) 납 생략 건조감량 생략</p> <p>강열잔류물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그 양은 0.05% 이하이어야 한다.</p>